

예 산 총 칙

2013년도 본예산

제 1 조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195,114,850	5,853,446
일반회계	181,230,063	5,436,902
특별회계	13,884,787	416,544
기타특별회계	13,884,787	416,544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379,342	11,380
지하수관리 특별회계	358,500	10,755
주차장 특별회계	7,342,873	220,286
주민소득및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2,630,728	78,922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	714,500	21,435
기반시설 특별회계	9,044	271
국민체육센터 특별회계	2,449,800	73,494

제 2 조 세입·세출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 예산"과 같다.

제 3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1,822,715천원으로 한다.

제 4 조 일반회계 지방채 차입 한도액은 1,700,000천원으로 한다.

제 5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총액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부서에서 동일부문에 있는 정책사업 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